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자치단체사무의자치입법권
확대를위한44개법령의
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
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어업인이 받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때 그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
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령」을 개정하는 등 4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건축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3조(「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한다”를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6조(「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해양수산물부령으로”를 “해양수산물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7조(「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인정하는 사업”을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8조(「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시한다”를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시한다”를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5호 중 “정하는”을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치료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9조의5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11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시한다”를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5. 그 밖에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1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50”을 “100”으로 한다.

제13조(「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의 보수”를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장비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비의 보수”로 한다.

제16조(「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제25조제5항 중 “50”을 “100”으로 한다.

제17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6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공사

제14조의6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보존조치 이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제18조(「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19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원

제28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로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20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정하는”을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1조(「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 중 “관련하여”를 “관련하여 발명교육센터등을 설치하려는 기관의 장 및”으로 한다.

제22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68조제17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3조(「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24조(「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고시한다”를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로 한다.

제25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
족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자 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인정
하는 사업”을 “인정하는 사업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고시한다”를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27조(「스마트조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
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29조(「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의 개정)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한다”를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30조(「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

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시한다”를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시한다”를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31조(「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을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으로 한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어촌특화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32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 별표 2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고시하는”을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3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고시한다”를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35조(「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6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제5항 중 “고시한다”를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37조(「종자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8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9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전단 중 “선정한다”를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단

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40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7호 중 “감경”을 “감면”으로 한다.

제41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인정하는”을 각각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지원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5제5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42조(「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학교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17조제2항 중 “고시한다”를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1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44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양환경 보전관리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활동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 공개)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u>행정안전부장관이</u>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 ----- <u>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단서 신설>	4. ----- ----- ----- ----- -----. <u>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u>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④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u>정한다</u> .	제9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u>해양수산부령으로</u> 정하는 사업	3. ----- <u>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4. ----- ----- ----- <u>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② ----- ----- ----- <u>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① ---- -----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전통김치의 복원·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 ② ----- -----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낙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 · 육성) ① (생 략)	제21조(낙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 ·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기준을 모두 갖춘 낙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 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u>고시한다</u> .	② ----- ----- ----- ----- ----- ----- ----- ----- <u>고시하거나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u>따른</u>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융자의 조건 등) ① ----- ----- <u>따라 국가가 지원하는</u> ----- -----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신청 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여 <u>고시한다</u> .	② ----- ----- ----- ----- ----- <u>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업, 교육·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확충·개량,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	2. ----- ----- ----- -----

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u>인정하는</u> 단체	----- ----- <u>인정하거</u> <u>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u> <u>로 정하는</u> -----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①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u>정하는</u> 사항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정하</u> <u>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u> <u>례로 정하는</u>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u> <u>원하는 경우 농어업인 질환의</u> <u>예방·치료 등에 관하여 해당</u>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u> <u>는 사업</u>
제9조의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	제9조의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

의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u>정한다</u>.	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농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u> 정하는 사항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 ----- ----- -----. 1.·2. (현행과 같음) 3. ----- -----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
제20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 설></u>	제20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및 사업시행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u>고시</u>한다.	<u>조례로 정하는 비용</u> ② ----- ----- ----- ----- ----- <u>고시</u>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조례</u>로 정한다.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u>50</u>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2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 <u>100</u> -----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①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략) <u><신설></u>	제35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①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생략) <u><신설></u>	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의 보수</u>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필요하다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장비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비의 보수</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u>50</u> 범위에서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100</u>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6(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14조의6(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 -----. -----. ----- ----- ----- ----- ----- -----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공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보존조치 이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u>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①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원항목 가. ~ 라. (생략) <u><신설></u>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u> <u>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문</u> <u>화예술교육의 시행에 관하</u> <u>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u> <u>조례로 정하는 비용</u>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12조의5(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원</u>
② (생략)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로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지방자치단</u>

	<u>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u>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①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u>정하는</u> 업무	5. ----- ----- ----- <u>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략)	제7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운영과 <u>관련하여</u>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9. ----- ----- <u>관련하여 발명교육센터등을 설치하려는 기관의 장</u> 및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① (생략)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u> 정하는 비용	4. ----- -----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8조(자금지원) ----- ----- -----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그 밖에 산림의 경영·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u> 사업	17. ----- ----- ----- <u>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u>

레로 정하는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 ③ (생략) 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 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1. ~ 3. (생략) 4. <u>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u> ⑤ (생략)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u>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u> ⑤ (현행과 같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석재산업의 전시·홍보 지원)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 등의 전시·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u>고시한다</u> .	제13조(석재산업의 전시·홍보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지정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지정운영)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상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u>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u> 기관이나 단체	4. ----- ----- ----- <u>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u>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수산물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수산물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u>인정하는 자</u>	제17조(수산물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u>인정하는 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수산물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u>인정하는 사업</u>	②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u>인정하는 사업 또는 해당 지</u>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 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u>고 시한다.</u>	<u>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u>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고 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보조 또는 용자) (생략) <u><신설></u>	제29조(보조 또는 용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용자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경비의 보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보조)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u>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u>
제7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u>

	<u>금</u> <u>비</u> <u>용</u>
--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①·② (생략)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은 순회지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u>정한다</u> .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u> ----- -----. ④ ----- ----- ----- ----- <u>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쌀가공품 홍보전시관이나 쌀 문화 체험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쌀가공산업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u>인정하는</u> 사항	제14조(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①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u>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u> ----- ② ----- ----- ----- <u>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쌀가공품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u>인정하는</u>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u>고시한다</u>.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인정하거나</u>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u>정하는</u> ----- ② ----- ----- ----- <u>고시하거나</u>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u>정한다</u>.
--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보조 및 용자)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32조의2(보조 및 용자) ① ----- ----- ----- -----.
② · ③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용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u>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어촌특화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따라 <u>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원하는</u>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서 신설>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등) ① ----- ----- ----- ----- ----- ----- ----- ----- 다 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금 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 ① (생략) ②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u><단서 신설></u>	제13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u>다만,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 별표 2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u>
제21조(귀국지원)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귀국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그 밖에 피해자의 귀국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u>고시하는</u>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1조(귀국지원)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① (생략)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u>고시한다</u> .	② ----- ----- ----- ----- <u>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범지구의 지정·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범지구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 ----- <u>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u>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치료를 위한 지원)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치료를 위한 지원) ① ----- ----- ----- ----- ----- ----- ----- ----- ----- ----- --. <u>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u>고시한다.</u>	⑤ ----- ----- ----- ----- ----- <u>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 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u>인정하는</u> 항목	4. ----- ----- -- <u>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u>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금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5. (생략) 6. <u>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u> 지역 산업의 다각화 및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보조가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u> 사업	제12조(자금 지원 등)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u> ----- ----- ----- -----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u> --
②·③ (생략)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u>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u>인</u> 지역 산업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u> 기반시 설	----- ----- ----- <u>산업통상자원부</u> <u>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u> <u>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u> --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u>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 ----- ----- ----- ----- ----- ----- <u>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u>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사용료 <u>감경</u> 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7. ----- <u>감면</u>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출산·양육의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4. ----- ----- ----- ----- <u>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u>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출산·양육의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3. ----- ----- ----- ----- <u>인정하거나 해당</u>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 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지원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장관 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학교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u>
제17조(국공립 해양교육시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해양프로그램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u>고시</u> 한다.	제17조(국공립 해양교육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고시</u>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조례로 정한다.</u>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 ----- -----

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 -----.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u>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국고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1조(국고보조 등)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양환경 보전관리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활동</u>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연 락 처	(044) 200 - 6753